

파생상품거래의 이해와 위험관리

19차시. 증거금제도(1)

파생상품거래의 이해와 위험관리

19. 증거금제도(1)

이슈 인사이드

1. 증거금제도의 필요성

파생상품거래 = 증거금거래

“증거금 예탁을 해야만 파생상품거래 가능”

증거금은 투자자가 증권/선물회사에 맡겨두는 금액이므로, “증거금 납부” 보다는 “증거금 예탁”이 더 적절한 표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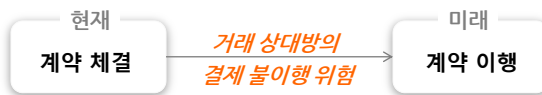
“왜 증거금 예탁이 필요할까?”



매매 계약 이행 보증을 위한
계약금(1천만 원) 지급

1억 원

“왜 증거금 예탁이 필요할까?”



장외 파생상품거래의 경우, 장내 파생상품 시장과 같은 증거금 예탁 제도가 없으므로, 신용도가 매우 높은 일부 기관투자자만 참여 가능

“왜 증거금 예탁이 필요할까?”

투자자의 **최종 결제 이행을 보증**받기 위해

대규모 연쇄적인 결제불이행 사태 방지

▶ 위험액 감소 유도

시장 충격 감소 효과

“주식시장 증거금” VS “파생상품시장 증거금”

결제대금의
일정비율 선납

계약금

(Down Payment)

미래 시점의
계약 이행 담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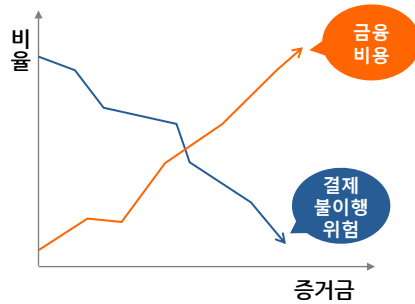
보증금

(Performance Bond)

이슈 인사이드

2. 증거금의 기본적인 산출 원리

“증거금 예탁은 얼마로?”



“증거금 예탁은 얼마로?”



최대 예상 손실금액은?

반대거래 시, 최종 결제 예상 금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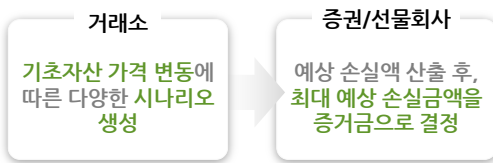
장내 파생상품거래는 거래 시점과 반대거래(계약해지) 시점 간의 차액을 결제하는
체도로 운영

“반대거래(계약해지) 시점”

일정 시점에 투자자의 모든 포지션이 일괄하여
반대거래(결제)되는 것으로 상정

장내거래는 상대거래가 아니므로 반대거래 시점을 사전에 알 수 없으며, 반대거래
시점이 길수록 현재 시점의 최대 예상 손실금액은 커져 결제불이행위험 증가

“반대거래 시 최종 결제 예상 금액”



“장내 파생상품시장 증거금액”

보유 포지션의 미래 처분손실을 고려하여 계산

$$1\text{억 원(보유 포지션)} - 8,500\text{만 원(예상 청산가치)} \\ = 1,500\text{만 원(손실추정액)} = \text{증거금}$$

이슈 인사이드

3. 증거금의 종류

구분	거래증거금	위탁증거금
예탁 주체	증권/선물회사(회원)	투자자

증권/선물회사(회원)는 자기계좌와 위탁계좌에서 산출된 거래증거금의 구분 예탁
→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모든 참가자의 결제불이행위험 종합 관리

구분	거래증거금	위탁증거금
예탁 주체	증권/선물회사(회원)	투자자
산출 시기	장 종료 후	장 중: 사전 위탁증거금 장 종료 후: 사후 위탁증거금

사후위탁증거금은 결제이행능력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적격기관 투자자에게만 제한적 허용

구분	거래증거금	위탁증거금
예탁 주체	증권/선물회사(회원)	투자자
산출 시기	장 종료 후	장 중: 사전 위탁증거금 장 종료 후: 사후 위탁증거금
예탁 수단	현금, 대응증권, 외화 (현금예탁필요액 없음)	현금, 대응증권, 외화 (현금예탁필요액 있음)

증거금제도의 필요성
증거금의 기본적인 산출 원리
증거금의 종류